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4
----------	-----

2009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가. 제안이유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하며(안 제17조제2항),
-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안 별표2 제5호),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함(안 별표2 제5호).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 주요 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원룸형·기숙사형 건축물의 주차대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 □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 ■ 상위법 피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에 대한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에서는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안 제5조제2항),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에서는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안 제21조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하고 있는바(안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동 사항들은 현재 법제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으로 심사중인 내용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안 심사가 끝나고, 공포된 후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여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 ■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제17조)

-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관리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는바,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법령의 변경내용(도시재개발사업 삭제)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의 실정에 맞도록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설치규모를 정한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별표2 중 제5호)

-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기준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이하,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동 개정조례안에서 세대당 주차대수를 위 규정의 범위중 최대한도로 규정한 것은<sup>1)</sup>, 급격한 기준 완화에 따른 정책적 혼란을 막고, 주거지역내 차고지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의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서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그에 상응하도록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음(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8대).
- 동 조례의 개정으로 면적이 비슷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오피스텔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양 시설간 주차수요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대수기준 하향조정은 주차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6항, 7항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규정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2대 이상 0.5대 이하이며,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 세대당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김우태 위원

-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 □ 답변 : 김상범 본부장

-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경우 현재 법령안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법령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관련 사항은 공포 후 조례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안 심사가 끝나고, 공포된 후 등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여지를 줄이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현재 법령안 심사가 진행중인 별표2 및 별표3 중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을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으로 수정함.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914 관련
----------	--------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25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수정 이유

-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안 심사중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내용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안 심사가 끝나고, 공포된 후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여지를 줄이고자 함.

안 별표2 및 별표3 중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을 "방송통신 시설중 방송국"으로 한다.

### 2. 주요 골자

- 현재 법령안 심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을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으로 수정함.(별표2 및 별표3)

### 3. 참고 사항 : 생략

[별표 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강(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3]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설물	최소주차구획	최고한도
1. 위탁시설	시설면적 670㎡당 1대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0㎡당 1대	시설면적 5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0㎡당 1대	시설면적 266㎡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5대 골프연습장 : 2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30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200인당 1대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강(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0㎡당 1대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0㎡당 1대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times \text{철도연장 (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 ④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상업화 된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수시설, 의료시설(경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b>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b>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강(아파트형제외), 발권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설물	최소주차구획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0㎡당 1대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b>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b>	시설면적 1,00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0㎡당 1대	시설면적 5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0㎡당 1대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5대 골프연습장: 2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30인당 1대 관람장: 정원 200인당 1대	골프장: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0㎡당 1대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0㎡당 1대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비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최소주차구획**은 도심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 화물조업을 위한 하역공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 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의 심의대상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최소주차구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된 설치기준을 **최소주차구획**으로 본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b>상업지역</b>에 설치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b>상업지역·준주거지역</b> -----            -----            -----            -----            -----            -----            -----            -----</p>
<p>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b>상업지역</b>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③ (생략)</p>	<p>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b>상업지역·준주거지역</b>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b>주차장설치의 고시</b>)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17조(<b>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고시</b>)            ① -----            -----            -----            -----            -----            -----            -----            -----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p>

